

<별지 3> 논문작성 형식

1. 사용언어 및 분량

가. 투고 원고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의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자나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 괄호 속에 부기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한 원고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한 요약문 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원고파일은 한글/MS-WORD프로그램에 의해 다음 각 호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용지종류 및 여백 : A4, 위쪽 40mm, 아래쪽 40mm, 왼쪽 35mm, 오른쪽 35mm, 머리말 0mm, 꼬리말 0mm

② 글자모양 및 크기 : 바탕 11포인트(각주는 9포인트)

③ 줄 간격 : 180%

다. 원고 분량은 A4 기준(작성 양식) 20매 내외 또는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한다. 다만, 200자 원고지 기준시 140매를 초과할 수 없다.

2. 구성

가. 투고원고는 다음의 순으로 구성· 배열되어야 한다.

① 제목(한글 및 외국어)

② 저자명(한글 및 외국어)

③ 목차

④ 본문

⑤ 주제어(3~5개, 한글, 외국어 병기)

⑥ 참고문헌

⑦ 논문초록(국문 및 외국문 각 A4 1매 이내)

⑧ 소속기관 및 직위, 연락주소, 전화(직장, 자택), 팩스번호,

이메일을 기재한다.

나. ‘가’ 각호의 외국어는 중국어, 일어, 영어, 독어, 불어 중의 하나로 작성한다.

다. 논문초록은 게재원고가 국문인 경우에는 외국문을 첨부하여야 하고, 외국문인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본문의 항목번호는 다음의 순서대로 한다.

I. 로마숫자(2칸 들여쓰기, 16포인트, 진하게, 다음 항목과 2줄 띄기)

1. 아라비아숫자(들여쓰기 없음, 14포인트, 진하게, 다음 항목과 1줄 띄기)

1) 반괄호 숫자(2칸 들여쓰기, 13포인트)

(1) 괄호 숫자(4칸 들여쓰기, 12포인트)

① 원기호 숫자(6칸 들여쓰기, 11포인트)

3. 문현의 인용

가. 본문에서의 문현인용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고, 각주에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① 인용되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단으로 나누어 인용하고, 본문과 구별되도록 인용문단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띄우고 글자크기를 9포인트 그리고 양쪽여백을 4ch(칸)으로 설정한다.

② 인용되는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사용하

여 표시한다.

- ③ 인용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생략부호(... 또는 ... (중략...))를 사용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변경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④ 인용문의 일부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국문은 인용부호(' ') 또는 밑줄을 그어 표시하고 영문은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 <예> 인용문의 강조체는 밑줄을 그어 표시한다(밑줄은 필자).

나. 각주에 의한 문헌인용

- ① 각주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용되는 문헌이 외국문헌인 경우에도 저자명, 논문제목, 서명 또는 잡지명, 발행지, 출판사 등과 같은 고유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글로 표기한다. 특히 See, Cf, Ibid, Supra, Hereinafter, et al, etc, Vgl, Dazu, Siehe, a.a.O. f(ff), usw 등과 같이 외국어로 된 지시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인용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문헌 사이에 세미콜론 (;)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 ③ 문헌을 재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문헌을 표시한 후 괄호 안에 참조한 문헌을 기재한 후 “재인용”이라고 표시한다.

다. 인용문헌의 표시

- ① 각 해당 부분에서의 각주와 본문 뒤의 참고문헌으로 표시한다.
- ② 인용되는 문헌이 단행본인 경우에는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쪽(영문 등 외국문헌인 경우 'p' 또는 2쪽 이상인 경우 'pp', 이하 같다)의 순서로 기재하고, 서양문헌의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대한문화사, 1995, 34-37쪽.

K.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California:

Addison-Wesely Publishing Co., 1979), pp. 4-5.

- ③ 인용되는 문헌이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서명(잡지인 경우에는 잡지명, 권수 호수), 출판사, 출판년, 페이지의 순서로 기재한다. 다만 월간지의 경우에는 권수와 호수 및 출판년도 대신에 “○○○○년 ○월호”로 기재할 수 있다. 그리고 논문 제목은 인용부호(“ ”)안에 기재한다.
- <예> 이성용, “독일 민간경비의 발전과 Police Private Partnership”, 치안정책연구제20호, 치안정책연구소, 2006, 161쪽.
- Richard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9, No. 3(September, 1985), p. 629.
- ④ 서명 및 잡지명은 그 명칭의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문헌의 경우 처음에는 그 전부를 표기하고 이후부터는 약어로 기재할 수 있다.
- ⑤ 저자가 두 명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가운데점(.)을 표시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저자만을 표기한 후 “외”라고 기재한다.
- ⑥ 인용문헌이 편집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편”이라고 기재한다.
- ⑦ 인용문헌이 번역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사선(/)을 긋고, 번역자의 이름을 기입한 뒤 “역”이라고 기재한다.
- <예> Joseph S. Bermudez,Jr. / 조용관 역, 북한과 테러리즘, 고려원, 1991, 77쪽.
- ⑧ 세미나자료집, 기념논문집, 공청회자료집 등은 서명 다음에 콜론(:)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표시한다.
- ⑨ 쪽수나 연도 등에서 ‘부터 까지’를 나타내는 부호로는 ‘-’를 사용한다.
- ⑩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각주에서 ‘참조’ 표시는 하지 않는다.

라. 동일한 문헌의 재인용 표시

- ① 바로 위의 각주에서 인용된 문헌을 연이어 재인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책(또는 위의 글), 페이지의 순서로 표기한다.
 <예> 위의 책(위의 글), 34쪽.
- ② 앞의 각주에서 제시된 문헌을 재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 앞의 책(또는 앞의 글), 페이지의 순서로 표기한다.
 <예> 이상안, 앞의 책(앞의 글), 34쪽.
- ③ 앞의 각주에서 동일 저자의 다른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 도서명(또는 논문명), 페이지의 순서로 표기한다.
 <예> ④ 이상안, 경찰행정학, 34쪽.
 ⑤ 이성용, “독일 민간경비의 발전과 Police Private Partnership”, 161쪽.

<각주 작성의 예>

1) 처음 인용할 경우

- (1) 저 서 : ① 조용관·김윤영,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도서출판 한울, 2009, 101–102쪽.
- ② K.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California: Addison – Wesely Publishing Co., 1979, pp. 4–5).
- (2) 번역서 : ① Joseph S. Bermudez,Jr. / 조용관 역, 북한과 테러리즘, 고려원, 1991, 77쪽
- (3) 논 문 : ① 김윤영, “북한의 수사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3호, 치안정책연구소, 2009, 147쪽.
- ② Richard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9, No. 3(September, 1985), p. 629.
- (4) 신 문 : ① 이세형, “실증연구로 밝혀진 불법시위 비용”, 동아일보, 2008. 8. 8.
- ② The Korean Times, 2008. 10. 5.

(5) 인터넷 : 정재성, “北 ‘혁명전략’ 그대론데 南 ‘안보’는 구멍”, <http://dailian.dailynk.com>(2008. 7. 29 검색).

2) 재인용할 경우

- (1) 위의 각주에 연이어서 재인용할 경우
 - ① 위의 책(위의 글), 34쪽.
 외국문헌: 위의 책(글), pp. 23–32.
- ② ① 이외의 경우
 - ④ ‘라’의 ①항 예: 이상안, 위의 책(위의 글), 34쪽.
 - ④ ‘라’의 ②항 예: 이상안, 앞의 책(앞의 글), 34쪽.
 - ④ ‘라’의 ③항 예: 이상안, 경찰행정학, 34쪽.
 - ④ 외국문헌: K. N. Waltz, 앞의 책(앞의 글), p. 247.
- (2) 번역서 : 위의 책, p. 232 또는 Joseph S. Bermudez,Jr. / 조용관 역, 앞의 책, 232쪽.
- (3) 신 문 : ① 위의 글.
 ② 김세형, 앞의 글.
- (5) 인터넷 : 김명혁, 위의 글(앞의 글), 5쪽.

마. 참고문헌 일람

인용문헌을 본문 후의 페이지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일괄하여 표시한다.

- ① 국내문헌, 외국문헌, 기타 순으로 구분(I. II. III)한다.
- ② 전호를 각각 단행본과 논문 및 기타로 구분(1. 2. 3)한다.
- ③ 개별 문헌의 순서는 저자별 가나다 및 알파벳순으로 한다.

4. 판례의 표시

가. 판례는 재판법원, 재판년월일, 선고(판결) 혹은 결정, 사건번호의 순서로 게재하되, 출처가 표기되는 경우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재판법원과 선고(판결) 혹은 결정은 재판년월일 다음에 합

하여 약칭 표기할 수 있다.

<예>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 1996. 4. 26
대판 96다1078

나. 판례의 출처는 다음과 같이 약어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 ① 법원공보(또는 판례공보) 1987년 125쪽 이하 → 공 1987, 125
- ② 대법원판례집 제11권 2집 형사편 29쪽 이하 → 집11(2), 형 29
- ③ 고등법원판례집 1970년 형사특별편 20쪽 이하 → 고집 1970,
형특 20
- ④ 하급심판결집 1984년 제2권 229쪽 → 하집 1984(2), 229
- ⑤ 판례카드 3675번 → 카 3675
- ⑥ 헌법재판소판례집 제5권 2집 14쪽 이하 → 헌집5(2), 14
- ⑦ 헌법재판소공보 제3호 255쪽 → 헌공3, 255
- ⑧ 판례총람 형법 338조 5번 → 총람 형338, 5

다. 외국판례는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 따른다.

5. 법령의 표시

- 가. 법령은 공식명칭과 「 」 를 사용하며 띄워 쓰기를 한다.
- 나. 법령의 이름이 긴 경우에는 “[이하 ○○○이라고 한다]”고 표시한 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고 한다]
- 다. 법령의 조항은 “제○조 제○항 제○호”의 방식으로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 단서, 전문 또는 후문을 특정하여야 한다.
- 라.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그 연월일 및 법령 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 예) 「형사소송법」 (1995.12.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고 1997.12. 13. 법률 제54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1조의2 제1항

마. 외국의 법령은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 따른다.

6. 기타 자료의 표시

가. 신문에 실린 자료는 작성자와 기사명이 있는 경우 저자명, “제목”, 신문명, 연월일을 표시하고, 작성자와 기사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명, 연월일로 표시한다.

나. 인터넷 자료는 저자명, “자료명”, URL(검색일자)를 표시한다.

<예> 정재성, “北 ‘혁명전략’ 그때론데 南 ‘안보’는 구멍”, <http://dailian.dailynk.com> (2008. 7. 29 검색).

7. 표 및 그림의 표시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의 방식으로 일련번호와 제목을 윗부분 가운데에 표시하고, 표와 그림의 왼쪽 아래부분에 그 출처 또는 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예> 주: 1)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대한문화사, 1995, 37쪽.

출처: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대한문화사, 1995, 34쪽.

8. 기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치안정책연구의 편집위원회 결정에 따른다.